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4. 7. 12.(금)
제4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3. 제안이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 근거 마련(안 제5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출배경

○ 농촌체험관광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에게 농어촌의 가치를 인식시켜 도내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험객의 발길이 끊어진 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여행객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5조**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다. 상위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4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않으므로, 본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코로나19의 영향과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관광객에게 외면받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체험객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이에 따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법적합성)**「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환급

을 통해 방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세부 추진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 해야 할 것임